



서대문구



수신자 **내부결재**

(경유)

제목 **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-공동개발 해제 및 신규지정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**

1. 2014년 제8차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(도시관리과-10950호, 2014.12.30)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4호(2013.9.26)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관내 「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」 중 대현동 142-27, 142-31호 일대 ‘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(공동개발 해제 및 신규지정)’ 주민제안에 대하여 2014년 제8차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(2014.12.18)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기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·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**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**하고자 합니다.

가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 개요

- 위 치 : 서대문구 대현동 142-27, 142-31호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)
- 변경내용 :
 - 대현동 142-4, 142-10, 142-11, 142-19, 142-26, 142-16, 142-32호와 대현동 142-27, 142-31호 공동개발 지정 해제
 - 대현동 142-23, 142-28호와 대현동 142-27, 142-31호 공동개발 신규 지정
- 변경사유 : 대현동 142-27, 31호에 대하여 인접한 국공유지와 공동개발 해제 및 당해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현동 142-23, 142-28호와 공동개발 지정

나.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(결정) 조서

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

구역명	필지		계획내용		비고
	위치	면적(m ²)	기정	변경	
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대현동 142-23	80.0	공동개발 (권장)	공동개발 (지정)	※ 기존 공동개발(지정)된 142-24·142-23호는 142-23으로 토지합병 (‘03.12.31)
	대현동 142-28	14.0			
	대현동 142-27	16.0	공동개발 (지정)	공동개발 (지정)	
	대현동 142-31	11.0			
	대현동 142-4	426.0			
	대현동 142-10	89.0			
	대현동 142-11	50.0			
	대현동 142-19	13.0			
	대현동 142-26	15.0			
	대현동 142-16	26.0			
	대현동 142-32	47.0			
	대현동 142-20	26.0	공동개발 (권장)	공동개발 (권장)	
대현동 142-22	33.0	공동개발 (권장)	공동개발 (권장)		

